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86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윤준병 · 임미애 · 부승찬
서미화 · 김 윤 · 안호영
임호선 · 이성윤 · 이정문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 기록, 직업 · 학력 · 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있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8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국회의원후원회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에 한정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연도별 고액후원금(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한 후원금을 말한다) 기부액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